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7. 15 선고 2020나126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7. 15 선고 2020나1260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7. 9 선고 2018가합1183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성낙근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민주

변론 종결2021. 6. 3.

판결 선고2021. 7. 15.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7. 9. 선고 2018가합11837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12. 2.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5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1,017,876,7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위 가항의 취소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학교법인 E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받은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별지 기재 채권의 반환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만 유지하면서, 그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의 "이 법원의 통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제1심법원의 통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C에게 1차 및 2차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근거한 2차 공정증서 작성이 유효하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2차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1차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공동대표이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G은 C에 대한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이던 J에게 C의 업무와 관련된 일은 N과 상의하라고 말한 사실, J은 1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N에게 G의 인감,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후 N으로부터 G의 인감,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1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한편, 위 J은 위와 같이 1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위임장의 G 이름과 위 사용인감계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자신이 일부 자필로 추가 기재하였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증언 내용은, G의 위임을 받은 N과 함께 1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인바, 결국 J의 위 1차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G의 위임 범위 내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공동대표이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인데, 피고 주장과 같이 1차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의 채무부담행위에 기해 작성된 2차 공정증서까지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는바, 그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2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를 삭제하고, 제9면 제6행을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의 2차 공정증서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은 1,017,876,711원이 남아 있다. 그런데, C는 별지 기재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위 1,017,876,711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위 취소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E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 및 같은 면 제11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 동대문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제1심법원의 동대문세무서, 동대문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9행의 "피고의 주식 51%를 보유하여" 다음에 "(피고의 나머지 주식 49%는 G의 자녀들인 O과 P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7행의 "말았다." 다음에 "또한, G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체결된 2016. 12. 2. 당시 C의 대표이사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0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를 삭제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당심에서, 2차 공정증서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C가 변제한 금액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50,000,000원(아래 표의 순번 6)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C의 계좌내역인을 제7, 13호증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그 변제내역을 추가로 정리·제출하였다.

1	2015. 09. 04.	30,000,000원	
2	2016. 02. 27.	10,000,000원	
3	2016. 06. 10.	10,000,000원	
4	2016. 06. 24.	25,000,000원	
5	2016. 10. 24.	1,000,000원	
6	2016. 12. 02.	50,000,000원	
7	2016. 12. 29.	5,000,000원	

1	2015. 09. 04.	30,000,000원	
합계		131,000,000원	

그러나, C의 대표이사이던 당심 증인 J은 법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M과 J, C 사이에 별개의 돈거래가 있었고, C는 C의 직원 Q의 원고 및 M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실도 있으며, J도 원고 회사의 직원들과 돈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당심 증인 J의 증언 녹취록 제11면, 제19~20면 참조), 을 제7, 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50,000,000원 외에 추가 변제금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표의 순번 1의 돈은 J이 2015. 9. 3. M으로부터 수령한 30,000,000원을 반환한 것이고,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위 표의 순번 2, 3, 4의 수취계좌는 원고가 아닌 R, S의 것인 사실이 인정되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C의 직원 Q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원고 및 M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원고 및 M에 대하여 11,151,84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표의 순번 5, 7은 위 Q의 채무 변제조로 송금된 돈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든 사정들(제14면 제7행부터 제15면 제8행까지)에,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채무자 C의 대표이사 G은 2016. 12. 2. 자신이 지배주주로 있던 피고와 변제기를 위 2016. 12. 2.보다 앞선 시점인 2016. 2. 20.로 정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로 하여금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2.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C가 E과 F센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한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 중 48억 원'에 대해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점, ③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위

피압류채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와 E 사이의 계약 진행 상황 등의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일반채권자들에게까지 위 피압류채권의 발생 사실이 알려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C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피압류채권을 양도해준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당심에서, C를 대표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G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인 위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G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7. 22. 'C의 공동대표이사이던 J이 G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7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기재하여 법원에 J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G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과 관련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G은 피고의 주주에 불과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스스로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남양우

판사박규도

판사김운석

별지

- 1)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원고의 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만 원고의 채권액에 포함시킨 제1심판결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만 포함시킨다.
- 2) 원고의 2020. 11. 24.자 답변서 제6면, 피고의 2020. 12. 2.자 준비서면 제11~13면 참조.